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각 제약사 대표이사 귀하 (경유)

제목 2015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지시

- 1. 관련 : 2015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(식약처 공고 제2014-274호, '14.9.5)
- 2. 「약사법」 제33조 및 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제10조에 따라 "말초신경계용약(120)", "감각기관용약(130)", "알레르기용약(140)", "호르몬제(항호르몬제를 포함)(240)", "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(250)", "외피용약(260)", "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목적(430)", "생물학적제제(631~632)"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 1차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함을 알려드리니, 귀 업체 해당 품목의 재평가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3. 아울러 허가사항 변경품목은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,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3조 및 동 고시 제11조에 따라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(신고)사항을 변경하도록 지시하니,
- 4. 다음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 후속조치 미 이행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, 제42조제4항 및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에 따라 허가(신고필)증 뒷면(변경 및 처분사항 등)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할 것.
  - 나. 다만, 원료약품 및 분량 변경은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항목에 대한 변경은 행정지시 후 2개월 이내에 변경 완료할 것.

	변경 및 처분사항 등
년 월 일	내 용
2017. 1. 12	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, 사용상의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호, '16.12.12)
<b>↑</b>	$\uparrow$
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	허가(신고)사항 변경 해당항목 행정지시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

- ※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에 추가할 것
- 다. 해당 업체는 보관하고 있는 품목허가(신고필)증에 재평가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관할 것.
- 라. 이미 제조·수입된 의약품으로서 변경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내용(변경대비문서 또는 추가사항 안내쪽지 등과 필요시 새로운 제품

설명서도 가능)을 추가 첨부(부착)하여 유통할 것.

- 마.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표시기재(포장, 첨부문서 등)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공급업체(도매상, 병·의원 및 약국 등)에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이를 당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.
- 5. 아울러 해당 품목을 광고함에 있어 '의약품 재평가' 표시,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붙임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> 분야별정보 > 의약품 > 의약품정보 > '허가사항제품정보' 란에서 확인 가능함

붙임: 2015년 의약품 문헌재평가 결과 각 1부. 끝.



주무관 이원임 연구관 도원임 가과장 **이수정** 

협조자

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-6848 (2016. 12. 12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의약품관 / www.mfds.go.kr 리총괄과

전화번호 043-719-2660 팩스번호 043-719-2650 / wonim89@korea.kr / 대국민 공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.